
2021 윤리감사 보고서

2022. 02. 24.



감 사 실

목 차

I. 윤리감사 개요	1
① 감사실시 근거	1
②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내용	1
③ 윤리감사 보고의무	1
II. 항목별 추진실적	2
① 제13조(윤리행동강령)	2
②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6
③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7
④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9
⑤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12
⑥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14
III. 2022년도 윤리감사 계획	16
붙임 : 2021년도 자체감사 실적	18

I

윤리감사 개요

① 감사실시 근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이하 ‘원전감독법’, 제정 2014.12.30., 시행 2015.07.01.)
- 공공기관 감사 : 윤리감사 시행 후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

②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내용

- 「원전감독법」 제19조(윤리감사)에 따라 감사는 제13조~제18조의 임직원 협력업체의 준수 의무 등에 관하여 정기/수시 감사 보고
-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 내용

대 상	준 수 내 용
(제13조) 윤리행동강령	▶ 윤리행동강령의 제정 및 공개, 준수 여부
(제14조) 임직원의 재산등록	▶ 2직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 이행 여부
(제15조) 임직원의 취업 제한	▶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기관 취업 제한 (재산등록 의무자) 위반 여부
(제16조) 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 사적이익 추구 및 특혜 목적의 정보제공·이용 금지 위반 여부
(제17조) 영리 업무의 금지	▶ 직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제18조) 협력업체의 행위 제한	▶ 협력업체의 행위 제한(뇌물 등 공여, 부당한 원전 정보 취득 및 이용, 품질 문서 위·변조 등) 위반 여부 및 후속 조치(등록취소/입찰 제한) 적정성

③ 윤리감사 보고의무

- 윤리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① 제13조(윤리행동강령)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 제13조(윤리행동강령)에 의거,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 전력기술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 및 공개 의무화

「원전감독법」 제13조(윤리행동강령)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공직 유관 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명시

나.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주요 내용

조 항	주 요 내 용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5조)차별대우 금지 (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6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6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6조의4)채직 중 취업청탁 제한 (6조의5) 외부고객 방문시 청탁물품 사전차단 조치 (7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8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9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0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1조)가족 채용 제한 (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4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1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18조)퇴직자의 취업 제한 등 (19조)공용 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3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24조)금품 등 제공 금지 (2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6조)협력업체 대상 윤리 행동기준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27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28조)투명한 회계처리 (29조)정보의 유출 금지 (30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제5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구성	(31조)외부강의등의 신고 (31조의2)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31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32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3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33조)건전한 경조사문화의 정착 (3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35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36조)성범죄 행위 금지 (36조의2) 음주운전 금지
제6장 위반시의 조치	(3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38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39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39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심의회 (40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정·개정 이력 및 공개 여부

- 2013.06.28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정
- 2020.05.27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18차 개정
- 2020.10.01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19차 개정
- 2021년 제정·개정사항 없음

2020년 개정 사항		비 고
제 18 차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사항 반영 • 외부강의 등 신고실태 관련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 조치 반영 	
	○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등 신고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신고사항(사례금 수령 외부강의 등) 구체화 - 사후 신고 가능 일자 변경(10일)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중복 수령 방지 조치 	별표3
제 19 차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반영 	제2조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공개
 - 인트라넷 및 인터넷 홈페이지(지속가능경영-청렴윤리/인권규범)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기관 청렴마당)

라.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

□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 8회 시행

점검 내용	점검 항목	점검 대상기간	조치 내용
2021년 윤리감사 특정 감사 실시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개정 및 공개, 준수 위반사항 전반	`21.1.28. ~ `21.2.3.	▸ 위반사항 없음
「설 명절 공직기강」 복무감사	-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및 성비위 사례 - 기타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21.2.8. ~ `21.2.19.	▸ 주의 1건
직원의 윤리기준 위반 행위 특별감사	- 금품·향응 수수 등 위반 여부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중 제35조, 제29조 위반 여부	`21.4.21. ~ `21.5.4.	▸ 징계(감봉2월) 1건
직원 품위실추 행위 특별감사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중 제36조(성범죄 행위 금지) 위반 여부	`20.1.1. ~ `21.3.7.	▸ 징계(감봉2월) 1건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 복무감사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전반	`21.6.14. ~ `21.6.30.	▸ 주의 1건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 복무 합동점검 감사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전반	`21.7.21. ~ `21.8.6.	▸ 주의 1건
청렴·윤리 취약분야 실태 점검 특정감사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중 외부강의 신고이행 실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21.9.2. ~ `21.9.24.	▸ 주의 1건
「연말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 복무감사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전반	`21.12.28. ~ `21.12.29.	▸ 위반사항 없음

*상기 ‘조치 내용’ 의 ‘위반사항 없음’ : 행동강령 위반사항인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없음을 표기

②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가. 관련법령

- 「원전감독법」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에 의거 한국전력기술 2직급 이상 임직원은 재산등록 대상

「원전감독법」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을 준용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등에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 명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 임원 → 2직급 이상으로 확대(2014.07.01)

나. 2021년도 재산등록 시행 현황

- 2021년 정기재산 변동 신고 대상자 중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재산 신고를 실시하였으며, 재산신고 위반사항 없음

3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에 의거 재산등록 대상인 한국전력기술 2직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 후 업무 관련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제한(취업 제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준용)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 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협력업체 모집심사 시 2직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의무 징구 여부
- 취업 제한 담당 부서의 취업 제한 관련 교육 및 안내 시행 여부

다.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 협력업체 모집심사 시 관련 규정에 의거 2직급 이상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의무 징구 : 시행 중
 - 2021년 2직급 이상 퇴직자 고용 협력업체 : 없음
 - 관련규정 :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제11조/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별지 제9호

□ 2021년도 정부공직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여부 심사 결과

○ 취업 제한 여부 심사 3건(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 2021.03월, 수석급(1급) : 취업 가능
- 2021.06월, 수석급(1급) : 취업 가능
- 2021.10월, 수석급(1급) : 취업 가능(미취업)

○ 임의취업 일제 조사 점검(2021.05월/10월)

- 점검 위반 해당사항 없음

□ 취업 제한 제도 교육 시행(총 2회)(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2021.06월	2021년도 상반기 퇴직예정자(36명)	공직자윤리법 관련 취업제한제도 주요 내용 및 절차 안내
2021.11월	정년퇴직 2년 전 예정자(116명)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시행(총 1회)

- 2021.06.25 :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게시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제·개정

- 2015.06.08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제정
- 2021.06.25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5차 개정
- * 사내 포탈 행정사항 게시 중(2021.06.25~)

4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에 의거, 원자력발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부당한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

「원전감독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전력기술 「취업규칙」,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 임직원이 회사의 기밀누설, 직무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화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회사의 기밀이나 직무상 취득한 중요사항을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29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 제15조(재직 중 영업비밀누설 금지)

- ① 직원은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 규정에 따라 취급·관리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유출·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주요 감사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이용에 관한 내·외부 제보 및 신고사항 점검(연중)
- 정보관리 취약요소 지속 점검(상시감사 모니터링/자체 감찰 : 수시)
 - 점검 내용 : 문서보안, 정보보안 등 보안관리 실태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이용에 관한 내·외부 제보 및 신고사항

○ 「원전감독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관련 내·외부 제보/

신고/접수 건 : 없음

□ 정보관리 점검사항

점검명칭	점검기간	점검 내용	조치
내부 보안감사	`21.11.09 ~ `21.12.15	기술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생활 보안 준수 여부 확인	▶ 부서별 취약 항목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 징구 및 조치 여부 확인
	`21.01.02 ~ `21.12.31	업무용 단말기의 공유폴더 사용위반 및 네트워크 취약포트 사용 등 관계 점검	▶ 공유폴더 사용 위반자에 대해 정보보안위규확인서 징구 및 벌점 부과 ▶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불시 보안점검	`21.01.01 ~ `21.12.31	문서방치, 이면지 사용, 캐비닛/서랍 미시건, 저장매체 방치, 보안점검표 확인 등 일반보안 준수 여부 점검	▶ 일반보안 위반자에 대해 정보보안위규확인서 징구 및 벌점 부과
용역수행 업체 보안감사	`21.07.19 ~ `21.10.29	용역수행업체를 통한 설계문서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보안 활동 및 인식 수준 점검	▶ 코로나 감염병 상황으로 용역 수행사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서류 점검 실시 ▶ 서류 점검 결과 미제출 용역 수행사(총68개 용역사 중 31개 용역사)에 대하여 정보보안 인식 고취 및 보안점검 취지 설명을 위한 점검 시행(`22.03)예정

- 회사 중요자료 접근 통제, 보안 강화 조치 시행
 - 원자로 계통설계 전산화 시스템 적용·운영
 - 도면 및 설계문서 관리시스템 적용·운영
 - 디지털라이브러리 시스템 적용·운영
 - 사이버보안관제실을 통한 자체 보안 관제 실시(2017.01 ~ 현재)
 - 대외 보안감사 수검
 -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산업부 정보보안 감사, 산업부 국가보안 감사, 산업부 특별보안 감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등)
 - 내부 보안감사 실시 : 연간 1회 이상(연 1회)
 - 불시 보안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실시)
 - 협력업체 보안감사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연 1회)
 - 기술자료 이용 이력 관제 시스템 운영(2021년)
 - 특이 접속자 검출 후 사업 PM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 재직자 314건 및 퇴직예정자 285건 통보 및 부정 사용 사항 등 검토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167건 : 이상 없음 / 147건 : 검토 중* • 퇴직예정자 285건 : 이상 없음
-------	---

*상기 '검토 중' 은 해당 사유 등록·부서장 확인·보안 검토 등 검토 절차 진행중 사항

5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징계하도록 명시

「원전감독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2호 및 제3호 생략 …)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기술 「정관」, 「취업규칙」 및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등에 영리 업무 금지사항을 명시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등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행위(휴직 중 포함)

「취업규칙」 제13조(회사 업무에 종사)

직원이 취업기간 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임직원의 영리 행위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내·외부 제보나 신고 등 다양한 탐지 채널을 활성화하여 운영
 - 회사 신고시스템(신문고/레드휘슬)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
- 인사담당부서의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관련 업무 수행현황 및 영리 행위 금지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 여부 등 점검

다.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

- 「원전감독법」 제17조 관련 내·외부 제보/신고접수 건 : 없음
- 정규직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및 영리행위 금지 관련 안내 메일 발송(2022.01.03)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및 영리 행위 금지 관련 안내 메일 발송(1/4/7/10월)
- 회사업무 외 종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사전 협조 승인

회사업무 외 종사	2021년 승인 건수
대학 출강 승인(인사노무처 승인일 기준)	3건

※ 겸직 신청 및 허가 내역

겸직 신청 사항	2021년 승인 건수
사외이사 등 외부위원 위촉 승인(인사노무처 승인일 기준)	4건

6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감독법」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에 협력업체의 뇌물공여 등 행위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행위 업체는 등록취소 등 제재

「원전감독법」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행동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정('13.06.28)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4조(금품·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한전기술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한전기술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검찰 기소 및 내·외부 제보나 신고 등을 활성화
- 협력업체 등록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징구 여부
- 협력업체 점검을 통한 청렴 및 윤리실태 조사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 없음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건수 : 없음
- 협력업체 등록 시 윤리행동강령 준수서약서 2021년도 징구 현황
 - 2021년도 수시모집 선정 및 협력약정 체결업체 : 4개 업체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인권경영이행 서약서 징구
 - 전체 협력업체 대상, 윤리서약서와는 별도의 인권경영이행 서약(2021.10)
- 협력업체 대상 비대면 설문조사 실시(2021.10~12)
 - 협력업체 청렴, 상생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설계엔지니어링 협력업체(79개) 대상 주제별 자유 기술 조사
 - 설문주제 : 상생·동반성장 / 계약제도·협력업체 운영 /
 계약이행 / 청렴·반부패 / 기타
 - 협력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 협력업체 관련 제도개선 발굴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피드백] 업체별 건의사항에 대한 내부검토 후 답변 회신

III

2022년도 윤리감사 계획

1 2022년도 윤리감사 추진방향

□ 내·외부 환경분석

- (고위직 출선수범 강조) 고위직의 출선수범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 증가
- (재발방지 강화) 리스크 기반 감사활동 및 내부통제로 재발방지 강화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22.5월 시행 예정에 따라 이해충돌 예방 체계 마련 필요
- (ESG 경영 확산) ESG(환경·사회·윤리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코로나19,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위기에 따른 기업의 존속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전·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 확대

- 삼성, SK,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 ESG경영 확산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식 ESG지표 정립 착수(`21.4)

□ 감사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전략방향	전략과제		
공공 신뢰회복 및 공익가치 수호	국민공감 감사 확대 및 감사 윤리 철저	ESG 윤리경영 지원 및 고질적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책임 위반 방지 및 사회적가치 성과 창출 기여

구 분	세부 추진과제
국민공감 감사 확대 및 감사 윤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책임 감사 강화 및 공개 확대 • 상임감사 출선수범 및 고위직 전파 강화 • 감사인 윤리교육 및 검증체계 강화
ESG 윤리경영 지원 및 고질적 조직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특색을 반영한 반부패 정책 개발 지원 • 비대면 문화정착 지원 및 조직문화 개선 • 신고제도 활성화 및 안심변호인제도 도입
사회적책임 위반 방지 및 사회적가치 성과 창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책임 위반 방지체계 고도화 • 이해충돌방지 체계 점검 및 윤리행동강령 점검 • 사회적책임 견인 및 공감대 형성

② 2022년도 주요 감사계획

□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등을 통한 윤리감사 사항 점검

순번	감사유형	감사사항	수행팀	일정(월)
1	종합감사	원자로설계개발단 종합감사	종합감사팀	6~7
2	재무감사	2021 회계연도 결산감사	일상감사팀	2~3
3	특정감사	외부강의등 및 겸직 관련 이행실태 특정감사	감사기획팀	5~6
4		예규 운영현황 점검 특정감사	일상감사팀	7~9
5		설계 검증, 평가업무 특정감사	종합감사팀	7~9
6		ESG경영 및 사회적 가치·책무 점검 특정감사	반부패감사팀	7~9
7		통합플랜트 정보관리시스템(IPIMS) 사용실태 특정감사	반부패감사팀	8~10
8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성과감사	종합감사팀	6~7
9		성과감사	디지털 융복합 사업활성화 이행 전략과제 성과 감사	종합감사팀
10	성과감사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혁파에 관한 성과 감사	감사기획팀	9~10
11	복무감사	공직기강 및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복무감사	종합감사팀	분기별
기타	감사 특명사항 및 수시 발생 건(특정감사 및 조사 등)		전팀	연중

※ 상기 감사 일정/항목은 긴급사항 발생 및 대외감사 수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내부감사 실적

감사 종류	연간 계획 (개)	실적 (개)	처분요구 실적(건)												신분상 조치인원(명)			재무상 조치금액 (백만원)
			총 건수	변 상	징 계	시 정	경고 · 주의	개 선	권 고	통 보	고 발	한지 조치	모범 사례	면 책	장 계	고 발	경고 · 주의	
종합감사	1	2	14	-	-	-	1	1	3	5	-	1	3	-	-	1	-	
재무감사	1	1	5	-	-	1	-	1	1	2	-	-	-	-	-	-	-	
특정감사	5	14	73	-	4	6	9	22	17	10	-	-	5	6	-	27	51	
복무감사	1	4	6	-	-	-	3	-	1	1	-	-	1	-	-	56	-	
성과감사	3	2	14	-	-	2	4	5	2	1	-	-	-	-	-	2	-	
합계	11	23	112	-	4	9	17	29	24	19	-	1	9	6	-	86	51	
일상감사	-	1,010	275	-	-	-	-	-	275	-	-	-	-	-	-	-	-	

- 내부감사(자체감사) 실적 : 총 23건(조사2건 제외), 처분요구 총 112건
- 일상감사 실시 총 1,010건, 의견서 발행 건 총 275건(27.2%)
 - 재무성과 6,478백만원(전년대비 53억원 증가), 제도개선 25건
-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이행 100%

2 외부감사 실적

감사 종류	연간 계획 (개)	실적 (개)	처분요구 실적(건)												신분상 조치인원(명)			재무상 조치금액 (백만원)
			총 건수	변 상	징 계	시 정	경고 · 주의	개 선	권 고	통 보	고 발	한지 조치	모범 사례	면 책	장 계	고 발	경고 · 주의	
감사원	-	-	-	-	-	-	-	-	-	-	-	-	-	-	-	-	-	
주무부처	-	1	1	-	-	-	1	-	-	-	-	-	-	-	-	1	-	
기타	-	-	-	-	-	-	-	-	-	-	-	-	-	-	-	-	-	
합계	-	1	1	-	-	-	1	-	-	-	-	-	-	-	-	1	-	